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 추천 요건 명확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2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 추천 요건 명확화(안 제9조의4)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

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4).

Ⅲ. 검토의견

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 추천 요건 명확화(안 제9조의4)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 중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이사회) ①·② (생략)	제9조의4(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국적 규모의 <u>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u>	5. ----- <u>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행법은 공제회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①공제회 이사장, ②고용노동부 및 국토

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③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④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⑤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구성 관련 법 조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공제회 이사장
2.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이사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현행법은 이사 중 하나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를 이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¹⁾²⁾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개별 노동조합에 비해 다양한 산업과 직역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추천권한이 ‘총연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 현재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①한국노동조합총연맹, ②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③전국노동조합총연맹, ④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⑤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⑥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임.

단체'에 한정되는바,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추천권한을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에 포함되지 못하는 노동단체의 추천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노사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35